

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1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9. 11. 29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행정규제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신기술 서비스·제품과 관련하여 제5조의2(우선허용·사후규제 원칙)이 시행(2019. 7. 17.)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규제영향분석서 서식 보완(안 별지 제1호 서식)

- 규제영향분석서 중 II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항목에 “ 9.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” 을 추가

나. 자체규제심사서 서식 보완(안 별지 제2호 서식)

- 자체규제심사서 중 7.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요소별 심사의견란에 “9. 우선 허용·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” 을 추가

3. 조례(안)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 혹은 해당사항 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 혹은 해당사항 없음

(4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5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19. 10. 18. ~ 11. 7.(20일)
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 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규제영향분석서

I.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

1. 규제사무명		2. 구 분					
		신 설		강 화		내용 심사	존속기한 연 장
3. 소관부서							
4. 근거법령 등		관 련 규제수					
5.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	○ 규제의 구분 : ○ 분석방법 - 연간비용 : - 피규제자수 : - 경쟁제한적 요소 : - 국제기준 :						
6. 종전규제 및 신설(변경)규 제의 내용							

II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1.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

- 가. 문제의 정의·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
- 나.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
- 다. 규제의 목표 설정

2.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

- 가.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
- 나. 기술수준,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

3.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

- 가. 기존규제의 대체여부
- 나.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
- 다.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
- 라.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

4.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

- 가. 규제의 비용분석
- 나. 규제의 편익분석
- 다. 비용·편익의 비교 및 검토

5.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

- 가. 시장경제제한 요소 포함 여부
- 나. 기업활동저해 요소 포함 여부

6. 규제내용의 객관성·명료성

- 가. 규제기준·절차의 명확성 등
- 나.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

7. 행정기구, 인력 및 예산의 소요

- 가.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·인력·예산 판단
- 나. 기존조직·인력·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

8. 민원사무의 구비서류·처리절차 등의 적정성

- 가.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
- 나.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

9. 우선 허용·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

III. 기타 기재사항

- 1.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
- 2. 기타 참고사항

[별지 제2호 서식]

자체규제심사서

1. 규제사무명		2. 구 분							
		신설		강화		내용 심사		존속기한 연 장	
3. 소관부서									
4. 근거법령 등									
5. 심사일시									
6. 심사참여자									
7.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요소별 심사의견	1.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— 2.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— 3.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— 4.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— 5.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— 6. 규제내용의 객관성·명료성 — 7. 행정기구, 인력 및 예산의 소요 — 8. 민원사무의 구비서류·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— 9. 우선 허용·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—								
8. 종합심사의견									
9. 심사참여자의 주요이견(요약)									

□ 행정규제기본법

제5조의2(우선허용·사후규제 원칙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(이하 "신기술 서비스·제품"이라 한다)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·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
2.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·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
3.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
4.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·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·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